

산업안전보건법 법령요지



제17조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로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 관내 대행기관 연락)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9조

안전 · 보건교육

정기교육 : 생산직(매분기 6시간), 사무직(매분기 3시간),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채용시교육 : 건설업 이외 (8시간 이상)
특별교육 : 건설업 이외 (16시간 이상)
5백만원 과태료(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제34조

법령요지 게시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부착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
※ 경고표지(인화성물질 등) 시행규칙 별표 1의 2 참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6조

위험성 평가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8조

안전상의 조치

기계·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물질,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세부 내용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39조

보건상의 조치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운·습도, 방사선, 균골격계 부담작업, 관리대상 화학물질 등 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세부 내용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참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금지 및 보고 등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자문서로 제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엔 자체없이 산재예방지도과에 전화 통보)
※ 요양신청서 제출 외에도 등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목재가공용 등근톱, 연삭기, 압력용기, 보일러, 교류아크 용접기,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등은 방호장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4조

안전인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도록 해야 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3조

안전검사

리프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 등을 주기적 안전검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 수입, 사용, 운전, 저장할 경우 물질 안전보건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19조

석면조사 등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설비를 해체하려는 자는 동 건축물과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5조

작업환경 측정

분진, 화학물질 및 소음[80dB이상]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6월에 1회 이상,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29조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64조

서류보존

산업재해 발생기록,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서류 등 : 3~30년간 보관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